

#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12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06년 4월 24일

제안자 : 김문천의원 외 4인

## □ 수정이유

- 『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』에서 규정한 회계  
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함

## □ 주요골자

- 안 제3조 제3항 중 “기금출납명령관”을 “기금운용관”으로 하며  
“기금출납공무원”을 “기금출납원”으로 함.

#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제3항 중 “기금출납명령관”을 “기금운용관”으로 하며  
“기금출납공무원”을 “기금출납원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b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~ ②</b> (생략)</p> <p>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장을 <u>기금출납명령관</u>으로 하고, 환경과 업무 담당사무관을 <u>기금출납공무원</u>으로 한다.</p>	<p><b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~ ②</b>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.....</p> <p>.....<u>기금운용관</u>...</p> <p>.....</p> <p><u>기금출납원</u>.....</p>